

대인 배상 I 위자료 관련 질문입니다.

대인배상 II 면책 약관에 의하여 보험사에서 인정한 상해 등급 2등급 지급한  
도 1,000만원까지 병원비를 받고 치료를 하였으며,  
그 후 산재로 전환하여 산재 종결(준용 7급 00)하고 장해 보상금 받음.

보험사 치료비 : 1,000 만원 (대인 배상 1, 상해 2등급 한도 : 1,000 만원)

산 재 치료비 : 1,000 만원

휴 업 급 여 : 1,000 만원

장 해 보 상 : 3,100 만원 (장해 등급 : 준용 7급00)

-----  
합 계 : 6,100 만원

맥브라이드 노동력 상실율 : 23.89% 영구

국가장해 보상법상 장해 율 : 60%

사고당시 56세 10개월. 신고 된 급여 220만/월. 과실 율 20%

### 질 문.

상기의 경우 대인배상2에 의한 손해 배상의 경우 소송 실익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되며, 대인 배상1에서 정한 장해 위자료를 청구하려 합니다.

1. 이것이 가능한지.... 다소 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등급별 한도액 내에서 지급 금액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8급일 경우 보상 한도액은 3,000만원입니다.
3. 청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소액 심판 청구, 보험사 직원에 청구 등 가장 효율적인 방법.